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0. 2. 23
- 나. 재 출 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0. 2.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0. 2.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1항에서 기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예치토록 한 규정에 의거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는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적립기금을 예치할 경우 시금고보다 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므로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 증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99. 1. 27)에 의거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금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안전성 확보와 이자수익을 증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운용·관리 - 조성된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운용한다.(안 제5조제1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현재 조성된 기금은 얼마입니까?	○ 3억원입니다.
○ 시금고에 최고 금리를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 금고는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세외수입 관계자와 협의하였습니다.
○ 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굳이 기금으로 몰아놓을 필요가 있는지?	○ 다른 기금(벤처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기금예치현황은?	○ 97년 10.5%, 98년 11.5%, 99년 7%로 나누어 예치해 놓았습니다.
○ 용자는 몇 %입니까?	○ 10.25%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앞으로 모든 은행에 기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다른 사항을 검토할 여지는 없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시금고는 부천시와 계약되어 있으므로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 것임
○ 향후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7호
의결년월일	2000. 3. 3 (제77회)

제출년월일 : 2000. 2. 2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1항에서 기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예치토록 한 규정에 의거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는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적립기금을 예치할 경우 시금고보다 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므로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 증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99. 1. 27)에 의거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금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안전성 확보와 이자 수익을 증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의 운용·관리 - 조성된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운용한다.(안 제5조제1항)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를 "(기금의 운용·관리)"로 하고 제1항 중 "기금은 부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정기에치하여 관리한다."를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운용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시금고"를 "시중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금고와"를 "시중 금융기관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시금고간"을 "시중 금융기관과"로 한다.

제12조 중 "시금고"를 "시중 금융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부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정기에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운용한다.

<p>②<u>시급고</u>에서는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규모유통업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에게 융자한다.</p> <p>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u>시급고</u>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1조(융자조건) ④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융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u>시급고</u>간의 협약에 의한다.</p> <p>제12조(추가융자) <u>시급고</u>에서는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p>	<p>②<u>시중 금융기관</u>.....</p> <p>.....</p> <p>.....</p> <p>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①.....</p> <p>.....</p> <p>.....</p> <p>.....<u>시중 금융기관</u>.....</p> <p>.....</p> <p>.....</p> <p>.....<u>시중 금융기관</u>.....</p> <p>.....</p> <p>.....</p> <p>.....<u>시중 금융기관</u>.....</p> <p>.....</p> <p>.....</p>
---	--